$$\text{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text{업무용 승용차별 감각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 \times \text{업무사용 비율} - 8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사업 연도월수}}{12} \times \text{보유기간 비율}$$

$$\text{※ 보유기간비율} = \frac{\text{해당사업연도의 보유기간또는 임차기간월수}}{\text{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2.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

일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관련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구 분	소득처분
일반 감가상각비	유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기타사외유출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업무용승용차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사후관리 기간 10년 규정 삭제)

업무용승용차구분	손금산입한도	소득처분
일반	Min (①, ②) ① Max[(800만원 - 해당연도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 0] ②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	유 보
리스· 렌트		기 타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사전법령해석법인2020-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4절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

Ⅰ. 건설자금이자를 과다계상한 경우

구 분	세무조정
감가상각자산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시부인계산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비상각자산	손금산입(유보) → 처분시 익금산입(유보)

Ⅱ.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구 분		세무조정
감가상각자산	건설중인자산	손금불산입(유보) → 완성된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완성자산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비상각자산		손금불산입(유보) → 처분시 손금산입(유보)

제5절 세무조정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업무무관지급이자 및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비용 및 차입금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전기이월된 것이다.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원금	비 고
17.33%	2,600,000	15,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4%	2,800,000	140,000,000	국민은행(6월30일까지 이자율 4%이며 이후 변경됨)
3.5%	2,450,000	140,000,000	국민은행(7월1일부터 이자율 3.5%로 변경됨)
2.5%	2,500,000	100,000,000	국민은행 건설자금이자 700,000포함(고정금리)

2. 업무무관 가지급금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대여자	금 액	대여기간	약정이자율
가지급금	대 표	300,000,000	2021.8.8. ~	무상
단기대여금	갑법인	100,000,000	2021.8.1. ~ 2023.7.31.	연3%
장기대여금	박주주	50,000,000	2019.5.5. ~ 2025.5.04.	무상

갑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약정이자 1,250,000원(=1억×3%×5/12)을 매월말 현금으로 수취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원천징수세액은 무시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은 4.6%로 가정한다.

4. 위의 건설자금이자는 공장건물을 짓기 위하여 차입한 28,000,000원에 대한 이자로서 동 차입금은 2015년 1월 1일 차입하여 공장건물에 직접 사용된 부분이며 건물의 완공예정일은 2025년 10월 5일이다.

5. 당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3,699,996원	상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1,687,500원	배당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7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250,000원	대표자 상여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관련지급이자	7,047,266원	기타사외유출

1. 인정이자의 익금조정은 소득의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은 상여로 박주주에게 귀속된 금액은 배당, 갑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① 차입금의 적수: 이자율별로 계산한다.
 - 4%의 차입금 적수 = 2,800,000 ÷ 4% × 365 = 25,550,000,000
 - 3.5%의 차입금 적수 = 2,450,000 ÷ 3.5% × 365 = 25,550,000,000
 - 2.5%의 차입금 적수 = 2,500,000 ÷ 2.5% × 365 = 36,500,000,000
 - 차입금 적수 계산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관련된 이자율은 인정이자계산시 제외한다.

 ② 인별 가지급금 적수는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의 적수 = 300,000,000 × 146 = 43,800,000,000
 - 갑법인의 적수 = 100,000,000 × 153 = 15,300,000,000
 - 박주주의 적수 = 50,000,000 × 365 = 18,250,000,000

 ③ 총 가지급금 적수 = 77,350,000,000

 ④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text{가중평균차입이자율} = \frac{\text{(대여시점 차입금 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text{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대여시점이 전기이월인 경우 = (140,000,000 × 4% + 100,000,000 × 2.5%) ÷ 240,000,000 = 3.37500%
 대여시점이 8월1일인 경우 = (140,000,000 × 3.5% + 100,000,000 × 2.5%) ÷ 240,000,000 = 3.08333%
 대여시점이 8월8일인 경우 = (140,000,000 × 3.5% + 100,000,000 × 2.5%) ÷ 240,000,000 = 3.08333%

 ⑤ 인별 인정이자
 - 대표이사 인정이자 = 43,800,000,000 × 3.08333% × 1/365 = 3,699,996
 - 갑법인 인정이자 = 15,300,000,000 × 3.08333% × 1/365 − 1,250,000 = 42,464
 ⇨ 시가(1,292,464원)의 5%미만이므로 인정이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박주주 인정이자 = 18,250,000,000 × 3.37500% × 1/365 = 1,687,500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지급이자 불산입액 계산
 ① 가지급금 적수 = 77,350,000,000
 ② 건설자금이자 상당액 차입금적수 = 700,000 ÷ 2.5% × 365 = 10,220,000,000
 ③ 손금불산입액 = (10,350,000 − 2,600,000 − 700,000) × 77,350,000,000 ÷ (25,550,000,000 + 25,550,000,000 + 36,500,000,000 − 10,220,000,000) = 7,047,266
 ④ 가지급금적수가 차입금적수보다 큰 경우 가지급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비율이 100%초과시 100%로 본다.

사례 1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

•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비용 및 차입금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전기이월된 것이다.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원금	비 고
17.33%	2,600,000	15,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4%	2,800,000	140,000,000	국민은행(6월30일까지 이자율 4%이며 이후 변경됨)
3.5%	2,450,000	140,000,000	국민은행(7월1일부터 이자율 3.5%로 변경됨)
2.5%	2,500,000	100,000,000	국민은행 건설자금이자 700,000포함(고정금리)

2. 업무무관 가지급금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대여자	금 액	대여기간	약정이자율
가지급금	대 표	300,000,000	2021.8.8. ~	무상
단기대여금	갑법인	100,000,000	2021.8.1. ~ 2023.7.31.	연3%
장기대여금	박주주	50,000,000	2019.5.5. ~ 2025.5.04.	무상

갑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약정이자 1,250,000원(=1억×3%×5/12)을 매월말 현금으로 수취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원천징수세액은 무시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은 4.6%로 가정한다.
4. 2019년 사업연도부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인정이자(대표이사)	5,520,000원	상여
익금산입	인정이자(주주)	2,300,000원	배당
익금산입	인정이자(관계회사)	678,219원	기타사외유출

① 인별 가지급금 적수는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의 적수 = 300,000,000 × 146 = 43,800,000,000
- 갑법인의 적수 = 100,000,000 × 153 = 15,300,000,000
- 박주주의 적수 = 50,000,000 × 365 = 18,250,000,000

② 총 가지급금 적수 = 77,350,000,000

③ 인별 인정이자
- 대표이사 인정이자 = 43,800,000,000 × 4.6% × 1/365 = 5,520,000
- 갑법인 인정이자 = 15,300,000,000 × 4.6% × 1/365 − 1,250,000 = 678,219
- 박주주 인정이자 = 18,250,000,000 × 4.6% × 1/365 = 2,300,000

④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인별로 각각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사례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시 5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

•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가지급금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1.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비용 및 차입금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전기이월된 것이다.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원금	비 고
17.33%	2,600,000	15,000,000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4%	2,800,000	140,000,000	국민은행(6월30일까지 이자율 4%이며 이후 변경됨)
3.5%	2,450,000	140,000,000	국민은행(7월1일부터 이자율 3.5%로 변경됨)
2.5%	2,500,000	100,000,000	국민은행 건설자금이자 700,000포함(고정금리)

2. 업무무관 가지급금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대여자	금 액	대여기간	약정이자율
가지급금	대 표	300,000,000	2021.8.8. ~	무상
단기대여금	갑법인	100,000,000	2021.8.1. ~ 2023.7.31.	연3%
장기대여금	박주주	50,000,000	2013.5.5. ~	무상

갑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약정이자 1,250,000원(=1억×3%×5/12)을 매월말 현금으로 수취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원천징수세액은 무시한다.)

3.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은 4.6%로 가정한다.

해답 및 계산과정

세무조정	과 목	금 액	소득처분
익금산입	인정이자(대표이사)	3,699,996원	상여
익금산입	인정이자(주주)	2,300,000원	배당

① 차입금의 적수: 이자율별로 계산한다.
- 4%의 차입금 적수 = 2,800,000 ÷ 4% × 365 = 25,550,000,000
- 3.5%의 차입금 적수 = 2,450,000 ÷ 3.5% × 365 = 25,550,000,000
- 2.5%의 차입금 적수 = 2,500,000 ÷ 2.5% × 365 = 36,500,000,000
- 차입금 적수 계산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관련된 이자율은 인정이자계산시 제외한다.

② 인별 가지급금 적수는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의 적수 = 300,000,000 × 146 = 43,800,000,000
- 갑법인의 적수 = 100,000,000 × 153 = 15,300,000,000
- 박주주의 적수 = 50,000,000 × 365 = 18,250,000,000

③ 총 가지급금 적수 = 77,350,000,000

④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text{가중평균차입이자율} = \frac{\text{(대여시점 차입금 잔액×차입이자율)의 합계액}}{\text{자금대여시점의 차입금잔액의 총액}}$$

대여시점이 전기이월인 경우 = (140,000,000 × 4% + 100,000,000 × 2.5%) ÷ 240,000,000 = 3.37500%
대여시점이 8월1일인 경우 = (140,000,000 × 3.5% + 100,000,000 × 2.5%) ÷ 240,000,000 = 3.08333%
대여시점이 8월8일인 경우 = (140,000,000 × 3.5% + 100,000,000 × 2.5%) ÷ 240,000,000 = 3.08333%

⑤ 인별 인정이자
- 대표이사 인정이자 = 43,800,000,000 × 3.08333% × 1/365 = 3,699,996
- 갑법인 인정이자 = 15,300,000,000 × 3.08333% × 1/365 − 1,250,000 = 42,464
 ⇨ 시가(1,292,464원)의 5%미만이므로 인정이자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박주주 인정이자 = 18,250,000,000 × 4.6% × 1/365 = 2,300,000

⑥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인별로 각각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3.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 일반적인 세액공제액」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29의4 ⑤)

-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3.8%)보다 클 것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4. 「임금증가분」의 계산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3.6%))]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Ⅱ.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1. 공제요건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169]가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69)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참고사항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시 근로자수	5명	6명	7명	5명	9명
2018년 세액공제		1명 세액공제	2018년분 추가공제	㉠ 2018년분 추가공제배제	
2019년 세액공제			1명 세액공제	㉡ 2019년분 추가공제배제	㉡ 2019년분 추가공제배제(적용)
2020년 세액공제				㉢ 세액공제 불가	추가공제 불가
2021년 세액공제					㉣ 4명 세액공제

㉠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가 2018년 상시 근로자 수(6명)에 비하여 1명 감소하였으므로 3차년도 2018년 분 추가공제를 배제한다.

㉡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가 2019년 상시 근로자 수(7명)에 비하여 2명 감소하였으므로 2차년도 2019년 분 추가공제와 3차년도 2019년분 추가공제를 배제한다. 2021년에 비록 2019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도 추가공제는 배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에 2019년분 추가공제 적용한다.

㉢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가 2019년 상시 근로자 수(7명)에 비하여 2명 감소하였으므로 2020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 2021년 상시 근로자 수(9명)가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에 비하여 4명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세액공제는 4명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시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5명 (0명)	6명 (1명)	8명 (2명)	9명 (0명)	10명 (3명)
2018년 세액공제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 세액공제	2018년분 청년외 및 청년 추가공제	㉠ 2018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2019년 세액공제			1명 청년외 세액공제 1명 청년 세액공제	㉡ 2019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 2019년분 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적용)
2020년 세액공제				㉢ 1명 청년외 세액공제	㉣ 2020년분 추가공제
2021년 세액공제					㉤ 1명 청년 세액공제

㉠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는 2018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6명)보다 3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1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이 때에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는 2019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8명)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2020년 2021년 과세연도)한다. 비록 2021년에 최소 세액공제받은 과세연도인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도 추가 세액공제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는 2019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8명)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1명에 대한 2020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10명)는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보다 1명 증가하였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과세연도에 2020년 추가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10명)는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보다 1명 증가하였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2명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2021년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수 1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예외적으로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에 2019년분 추가공제 적용한다.(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서면법령해석법인2020-4043, 2020.12.14.)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Ⅶ. 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 (원칙)

「Ⅵ. 2.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7 ⑥)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1명	1명 증가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4명	4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1,100만원 = 55,000,000원

㉡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4명-3명)×(1,100만원 - 700만원) + 3명 × 1,100만원 = 37,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1] × ①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1] × ②금액

[1]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1]	수도권내	수도권밖[1]	수도권내	수도권밖[1]
① 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 금액(청년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1]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8년	2019년		2019년 대비 증감여부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0명 증가	11명	1명 증가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0명 증가	4명	4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1,100만원 = 55,000,000원

㉡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1,100만원 = 55,000,000원

㉢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4명-3명) × (1,100만원 - 700만원) ×2 + 3명 × 1,100만원 × 2 = 74,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8년	2019년		2019년 대비 증감여부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0명 증가	8명	2명 감소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0명 증가	7명	1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0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1,100만원 = 55,000,000원

㉡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1,100만원 = 55,000,000원

㉢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2명 × 700만원 × 2 + 1명 × 1,100만원 × 2 = 50,000,000원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회계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청년 + 장애 + 60세이상)	청년외	청년등(청년 + 경력단절)	청년외
2020년	6.00	1.83	4.16	2.58	3.41
2019년	4.25	1.33	2.91	1.33	2.91
증감	1.75	0.50	1.25	1.25	0.50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회계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청년 + 장애 + 60세이상)	청년외	청년등(청년 + 경력단절)	청년외
2019년	4.25	1.33	2.91	1.33	2.91
2018년	2.41	1.00	1.41	1.00	1.41
증감	1.84	0.33	1.50	0.33	1.50

1) 2019년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14,130,000

㉠ 청년등 세액공제 = 0.33×11,000,000 = 3,63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50×7,000,000 = 10,50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3,196,452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25,000,000÷1.33×9.584% = 1,801,503

㉡ 청년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5,000,000÷2.91×9.584% = 3,446,301

㉢ 청년등 세액공제 = 0.33×1,801,667×100% = 594,495

㉣ 청년외 세액공제 = 1.50×3,446,615×50% = 2,601,957

2) 2020년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28,38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4,250,000

㉠ 청년등 세액공제 = 0.50×11,000,000 = 5,50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25×7,000,000 = 8,750,000

• 2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14,130,000

상시근로자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3,63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0,50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5,000,816

• 1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804,364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40,000,000÷1.33×9.584%×1,700,000÷2.58 = 826,977

㉡ 청년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10,000,000÷3.41×9.584% = 3,082,573

㉢ 청년등 세액공제 = 1.25×826,977×100% = 1,033,721

㉣ 청년외 세액공제 = 0.50×3,082,573×50% = 770,643

• 2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3,196,452

상시근로자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594,495

㉡ 청년외 세액공제 = 2,601,957

③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 10,000,000×30% = 3,000,000

3) 2021년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32,89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4,510,000
2021년 상시근로자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수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함
㉠ 청년등 세액공제 = 0.41×11,000,000 = 4,51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0
• 2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4,250,000
2021년 상시근로자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20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5,50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8,750,000
• 3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14,130,000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0.33×11,000,000 = 3,63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50×7,000,000 = 10,50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2,203,018
• 1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398,654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외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세액공제만 적용함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8,000,000÷3.66×9.584%×2,000,000÷3.66 = 972,327
㉡ 청년등 세액공제 = 0.41×972,327×100% = 398,654
㉢ 청년외 세액공제 = 0
• 2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804,364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20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1,033,721
㉡ 청년외 세액공제 = 770,643

③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2차) = 18,000,000×30% = 5,400,000